

「공고문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업력이 **6개월 이상**인 남구 소상공인 **100개소**

- 신청인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 소재지 = 실제 사업장 소재지
- 다수 점포 운영 시 **최초 신청 사업장(1건)만** 신청 가능
- **2년간(2024~2023년)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불가 : 울산시 및 남구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 사치향락업종, 대기업프랜차이즈 등 지원 제외 업종 확인 必

2. 접수일정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5. 7. ~ 5. 23.(금) 18:00**
- 선정발표 : **2025. 7월 중(개별연락)** ※ 사업 선정 통보 후 환경개선 진행
- 신청방법 - 이메일 : unsbiz@korea.kr
 - 방문접수 : 소상공인진흥과(남구청 제2별관, 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6)
- 신청서류 : 체크리스트·신청서·동의서, 표준견적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매출액증빙서류(부가가치세 증명원 등) ※ 세부사항 공고문 본문 참고 필수

3. 지원내용 및 선정방법

점포환경개선비	스마트·안전시스템개선비	입식좌석 개선비
·옥외광고물 [예: 간판] ·인테리어 [예: 도배 조명 샷시 등]	·판매시스템 [예:키오스크, POS] ·안전 [예:CCTV]	·입식좌석 (식탁1개, 의자4개) 1세트 30만원 이내 ·좌석→입식 교체, 신규 설치

점수 산출 후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

- ①업력이 긴, ②매출액이 적은, ③사업 수혜 여부, ④임차보증금이 적은 순으로 선정

4. 신청 시 주요 ★ 주의 사항 ★

- 견적서 **공급가액 80%이내(자부담20%)**에서 **최대 200만원** 지원
- **자부담금(20%) 및 부가세·한도초과분·배송료·관세 사업주 부담**
예) 견적금액 220만원(공급가액200만+부가세20만)
→ **지원금액 160만원(공급가액의80%), 사업주 부담 60만원(자부담금+부가세)**
- 점포환경개선시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 재산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소파 등)
- 점포환경·입식좌석개선비 지원 시 **울산 소재 외주·가구업체** 계약을 원칙으로 함
- 사업 진행 통보 이전에 경영환경개선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 진행 통보 후 **2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사업자 대표(법인) 통장에서 **계좌이체** 혹은 **신용(체크)카드 결제** 원칙

※ **자세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공고문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점포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개선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1.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I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사업공고 공고일 기준 현재 **업력이 6개월 이상인 남구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입식좌석개선비의 경우 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한하여 지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이 기준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4. 10. 22.까지 신청 가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매출액과 종사자 수 모두** 충족

- **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기준 **[별지1]**에 해당할 것
- **종사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자

□ 지원규모 : 100개 업소 내외

-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한하여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제외대상

- ※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환경개선장소) 일치해야 함
- ※ 다수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중복신청 불가하며, **최초 신청한 업장 기준**으로만 지원(변경 불가)

- 2년 이내(2024년, 2023년)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사업자
 - 울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2025년 포함)
 - 남구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지원사업(2025년 포함)
 -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남구 외식업 입식좌석개선사업
 - 남구 노후간판 교체사업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업종[별지2]
-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기업 포함)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능)
-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 “0” 인 경우
-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으로 신청한 사업자 *(예시) 간판 제작업을 영위하면서 옥외광고물 신청
- 사업자등록 변경(업종, 대표자 등)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예정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2. 접수일정

- 공고일자 : 2025. 4. 21.(월)
- 접수기간 : **2025. 5. 7.(수) ~ 5. 23.(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선정발표 : 2025. 7월 중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 선정 발표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 및 방문 접수

○ 이메일접수 : unsbiz@korea.kr (25. 5. 7. 09:00 접수 시작)

○ 방문접수 : 소상공인진흥과(남구청 제2별관, 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6)

※ 방문접수) 09:00 ~ 18:00(공휴일 및 주말제외), 12:00 ~ 13:00(중식시간)

신분증 지참 필수, 대리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대표자 본인 직접 작성

□ 문의 : ☎052-226-3154/3153

3. 선정내용

□ 선정기준

○ 신청업체의 업력, 매출액, 사업장 임차 규모 등 계량항목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계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

□ 지원우대 사항

○ 「울산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남구 소재 착한가격업소는 자격요건 심사 후 우선 선발

○ 2025년 남구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사업 완료자 가점(6점) 부여 ※예비창업자제외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사업자 가점(3점) 부여

□ 동점자 발생 시

○ 업력이 긴 업체,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수혜 여부,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적은 업체 순으로 선정

II 세부 지원 내용

1. 단위사업별 지원 내용

단위사업	단위항목	세부 지원내용	한도액
점포환경 개선비	옥외광고물	■ 옥외 LED·FLEX·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80%)
	인테리어	■ 내부보수: 도배, 도색, 바닥재, 조명공사, 어닝, 샷시, 씬팅 등 ■ 화장실 개선: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공용화장실제외)	
스마트 안전 시스템개선비	판매시스템	■ 무인결제기(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서빙로봇 구매 지원 등 ■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안전	■ CCTV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입식좌석 개선비	좌석세트	■ 입식좌석 1세트(식탁 1개, 의자4개)당 30만원 이하 ■ 좌식→입식 교체 비용, 신규 설치 지원	

★ 신청 시 주요 유의사항

- 1) **1인 1건**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장 중복 신청 불가
- 2) 사업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제출기일까지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2) 점포환경개선비 지원 시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 재산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
(예시) PC,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가스레인지, 소파 등
- 3)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 지원 제외 (예시) 풍선간판
- 4) 점포환경·입식좌석개선비 지원 시 **울산 소재 외주·가구업체 계약**을 원칙으로 함
- 5) 단위사업별 중복 신청 불가, 단위사업 내 세부 지원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 6) 사업 선정 통보 이전에 **경영환경개선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8) 환경개선지원금의 20%, **부가세·관세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배송료는 사업주 부담**
- 9) 환경개선 비용은 사업자 **대표(법인) 통장에서 계좌이체 혹은 신용(체크)카드 결제** 원칙, 현금지급(인출 후 송금)이나 개인카드 결제는 불인정

2. 지원 한도액

- 접수 시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의 80%이내**에서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지원

※ 공급가액은 부가세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세 등 나머지는 자부담**

○ 지원금액 산정 예시

구분 (예시)	견적금액			지원금액	자기부담금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공급가액 80% (최대 한도 내)	공급가액 20% 이상	부가세	합계
점포환경개선비	400만원	40만원	440만원	200만원	200만원	40만원	240만원
스마트·안전 시스템개선비	260만원	26만원	286만원	200만원	60만원	26만원	86만원
입식좌석개선비	200만원	20만원	220만원	160만원	40만원	20만원	60만원

3. 신청서류

구분	제출 서류 목록
필수	1. 지원신청 체크리스트 [서식1호] 및 사업지원 신청서 [서식2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3호]
	3. 표준견적서 [서식4호] ※ 환경 개선 금액 확정(견적서 기준) 후 신청 가능
	4.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처 :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5.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6.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처 :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 체납·미납 지원불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국세납세증명서 인정불가, 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의 지방세납세 증명서 각각 제출
	7. 매출액 증빙서류 ○ 대상연도 : 2024년 (발급처 : 무인발급기, 홈택스(인터넷), 세무서 등)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해당 시	9.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주의사항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유효기간은 접수 마감일(25. 5. 23.) 이후여야 함. ※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됨 ※ 최종 선정 후 사업수행 중도 변경 시[제8호 서식], 포기 시[제9호 서식] 제출 필수

III 사업 운영 지침

1. 선정 취소

- 선정 및 서류 제출기간 동안 **경영환경개선(인테리어공사 등)을 미리 진행**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외주업체, 제작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완료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사업 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지정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진행 통보 후 약 2개월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 제출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휴·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사업기간 내 사업 휴·폐업·양도)
- 기타 남구청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제8호 서식]를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고 진행**
- 단위사업간 변경은 불가함
- **변경 시 시공(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은 상향되지 않음**
→ 변경 시 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의 80%로
- 지원결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에 즉시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하며,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제9호 서식]를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포기 신청서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는 경우 직권 취소 처리함

3. 외주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신청분야가 **[점포환경개선비][입식좌선개선비]**인 경우에 외주업체는 2개 이내로 울산광역시 내 소재한 업체로 제한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등록업체만 외주업체로 선정 가능
(※ 제작업체의 옥외광고업 등록증 사본 징구)

-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또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 외주업체 선정
- 타 외주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선정된 경우는 취소 처리(지원금 환수 처리)
- 신청분야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 상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 선정 불가

4.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방식
 -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정산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후 정산 지급
- 시공(제작)비용은 사업자 대표(법인) 통장에서 계좌이체 하거나 사업자 대표(법인)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지급(현금인출 후 송금)이나 법인대표이사 개인카드 결제는 불인정
- 지출증빙의 방법
 - 계좌이체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와 은행에서 발행한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확인증* 제출을 원칙으로 함
 - * 이체(송금)확인증에는 입금자, 수령자, 각 계좌번호, 금액, 날짜가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카드결제의 경우 사업자 대표(법인) 카드 증빙서류와 카드전표로 가능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5.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울산시 및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과대·허위견적,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타 시공사 명의를 이용,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사업시행, 타 기관 동일사업 지원 등

6.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 진행 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 정산 서류는 관련서식[제5호 서식] 제출자료 목록을 참고
- 지출증빙은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은행 “계좌이체내역서” 또는 “모바일 송금내역서” 제출, 카드결제 시 “카드전표” 및 “사업자 대표 (법인) 카드 증빙 서류” 제출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금 지급 불가
-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남구청 담당자는 현장 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IV 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남구(소상공인진흥과)에 제출 (제출기간 안에 보완서류 등 모두 접수되어야 함)
	평가 및 지원결정 (남구)	▶ 1차 서류 평가 및 선정평가 점수 산출 ▶ 2차 지방보조금 심의 후 선정자 확정 → 사업 진행 통보 (개별 연락 및 안내)
사업 진행	사업수행	▶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수행 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추진
지원금 정산 및 지급	비용 선지급 (소상공인→외주업체)	▶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공급가액+부가세) 외주업체에 선 지출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현금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 정산서 제출 (소상공인→남구)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지원금 지급 (남구→소상공인)	▶ 환경개선 결과 현장 검토 및 점검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은 정산서류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1 ~ 2주 이상 소요

[별지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호프, 소주방 등)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682) :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91121	골프장 운영업 * 골프연습장(91136)은 신청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지원신청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리스트 내용	확인사항
업력	. 업력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개업일이 2024.10.22.이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소상공인 범위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업종별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별표1]에 적합	
제외 업종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업종[별표2]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지원 제외 대상	. 2년 이내(2024년, 2023년)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사업 - 울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2025년 포함) - 남구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2025년 포함) -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남구 외식업 입식좌석개선사업 - 남구 노후간판 교체사업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업종[별지2] .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기업 포함)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0”인 경우 .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으로 신청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 변경(업종, 대표자 등)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예정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우대 사항	. 울산 남구 소재 「착한가격업소」 . 2025년 남구 경영주치의(컨설팅) 완료한 업체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포함)에 해당되는 저소득사업자 (해당 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 ▶ 본 참여 신청서 및 공고문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함을 확인합니다.
- ▶ 필수서류 누락 또는 공고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탈락으로 간주함에 동의합니다.
- ▶ 부가세, 자부담금, 초과금액은 신청업체 부담 및 평가 시 지원금 조정여부에 동의합니다.

2025. . .

신청업체명		대표자	_____ (인)
-------	--	-----	-----------

사업 지원 신청서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지원하는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

① 신청자 본인은 외주업체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과대·허위견적,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부당)개입, 타 시공사 명의를 이용,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사업 시행 등 ◀

② 위 사항을 위반하여 유사사업 수혜 및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해당 사업 지원 취소, 지원금 환수,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 : _____ (인)

1. 신청자 개요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전화	
임차현황	<input type="checkbox"/> 자가 *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임차 (백만원, 월세 천원)	휴대전화	

2. 추진개요

단위사업	<input type="checkbox"/> 점포환경개선(옥외광고물·인테리어) <input type="checkbox"/> 스마트·안전시스템개선비 <input type="checkbox"/> 입식좌석개선비						
시공(제작)내용	총소요비용	공급가액 (부가세제외)	원	자부담금 (20%)	원	지원금 (80%)	원
	외주업체 (총 : 개)	외주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3. 추진계획

※ 별도 페이지 가능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 필요성	

4. 사업장 모습(현재 사업장 외부 사진, 간판이 보이게 촬영)



5. 사업장 모습 (현재 사업장 전체 내부 사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이용목적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운영·관리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 이용범위 : 지원사업 관련된 부분한정
-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급 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 자 : 해당사업과 관련된 지자체 및 공공기관
- 제공목적 : 중복지원 조회 및 지원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제공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지원금 정산서(선정업체) 제출자료 목록

항목	제출자료 목록	
필수	1. 지원금 정산 신청서(제6호서식)	
	2. 완료보고서(제7호서식)	
	3. 대금결제내역 증빙자료	
	결제수단에 따라 선택	1) 국세청 세금신고용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불가업체(연매출 8천만원 미만)는 가능 ☞ 외주(제작)업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제출 2) 입금내역 증빙서류 ★ 계좌이체(송금)확인증 또는 모바일 송금확인증 ☞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 금액, 날짜 명확히 표기
카드결제	1) 카드 증빙서류 ★ 사업자 대표(법인)카드 증빙서류 ☞ “카드번호”, “카드명의” 등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2) 결제 증빙서류 ★ 카드전표	
4. 지원금 수령용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대표자(법인) 통장사본 제출		
해당시 추가	시스템 개선비 신청자에 한함	5. 거래명세서

- ▶ 본 지원금 신청서 및 공고문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함을 확인합니다.
- ▶ 부가세, 자부담금, 초과금액은 신청업체 부담에 동의합니다(부가세 지원 불가)
- ▶ 필수서류 누락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며 남구청의 요청에 따라 적극 협조할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업체명		대표자	_____ (인)
-------	--	-----	-----------

완료 보고서

1. 추진개요

단위사업	<input type="checkbox"/> 점포환경개선(옥외광고물·인테리어) <input type="checkbox"/> 스마트안전시스템개선비 <input type="checkbox"/> 입식좌석개선비			
시공(제작) 내용	시공(제작) 내용		시공(제작) 기간	
	1.		2025년	월 일 ~ 월 일
	2.			
3.				
지원결과물	<input type="checkbox"/> 시공 전/후 사진 <input type="checkbox"/> 사업 결과물 <input type="checkbox"/> 거래명세서(판매안전 시스템개선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설치결과

※ 별도페이지 가능

시공(제작) 결과물 ※ 견적서에 표기된 품목(항목)이 시공 전/후 각각 개별 촬영되어야 함.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3. 사업 만족도

1. 금번 지원 사업에 대해 해당하는 만족도에 체크해주시시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2. 개선 및 건의사항 : ()				

[참 고]

남구청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게시판



소상공인진흥과

남구청 누리집 게시판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supportBusiness>)